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

언 론 사 주식회사 울산시민일보(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 중앙로 161, 4층
대표이사 이두남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5일자 1면 「울산시장 다자대결…김두겸 29.4% 1위」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중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

언 론 사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중부매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436번길 22
대표이사 한인섭

심의대상기사 1. 2026년 2월 11일자 1면 「민주 이장섭·국힘 이범석 후보 적합도 1위」 제하의 기사
2. 2026년 2월 11일자 3면 「이장섭, 전체민주당 지지층서 모두 가장 높아」 제하의 기사
3. 2026년 2월 11일자 3면 「국힘은 이범석 전반 우위 속 40대는 서승우 앞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청주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3

언 론 사 주식회사 서귀포신문(서귀포신문)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7, 2층
대표이사 김창홍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4일자 3면 「여론조사 오영훈, 문대림, 위성곤 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주도지사)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 후보자들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에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 원 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 원	박 은 태
	위 원	한 기 천
	위 원	신 우 열
	위 원	김 형 철
	위 원	이 보 연
	위 원	장 승 진
	위 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4

언 론 사 서울매일 주식회사(서울매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46, 202호
대표이사 현은지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19일자 1면 「정원오, 설 연휴 방송3사 여론조사 1위...서울시장 선거
우위 굳히나」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와 관련하여, 조사의 전제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 제목과 본문에 단정적으
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5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북언론문화원(시사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14층
대표이사 김진구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호 72~73면 「진보당 강성희 前 국회의원, 전주시장 출마」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주시장)와 관련하여, 전주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문을 상당 부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 원 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 원	박 은 태
	위 원	한 기 천
	위 원	신 우 열
	위 원	김 형 철
	위 원	이 보 연
	위 원	장 승 진
	위 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7

언 론 사 주식회사 김천내일신문(김천내일신문)
경북 김천시 시청4길 6
대표이사 최도철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12일자 4면 「김천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김천시장)와 관련하여, 김천시장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 원 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 원	박 은 태
	위 원	한 기 천
	위 원	신 우 열
	위 원	김 형 철
	위 원	이 보 연
	위 원	장 승 진
	위 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8

언 론 사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서울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난계로28길 8, 3층
대표이사 강영식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2일자 수도권면 「5천 시민이 몰렸다」 이재준 시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수원시장 재선 현실화되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수원시장)와 관련하여, 기사 제목 등에서 '재선
현실화되다'라는 표현으로 선거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여 단정적으로 표현하
였기에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 원 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 원	박 은 태
	위 원	한 기 천
	위 원	신 우 열
	위 원	김 형 철
	위 원	이 보 연
	위 원	장 승 진
	위 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9

언 론 사 서울뉴스통신 주식회사(서울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난계로28길 8, 3층
대표이사 강영식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9일자 수도권면 「구름인파 몰렸다」 정명근 시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화성시장 대세론 현실화되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화성시장)와 관련하여, 제목 등에서 ‘구름 인파’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대세론 현실화되다!라는 표현으로 선거 결과를 단정적으
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10

언 론 사 주식회사 열린미디어그룹(열린뉴스통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1127호
대표자 사내이사 조성원

심의대상기사 [별지 1] 심의대상기사 참조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열린미디어그룹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린뉴스통신 홈페이지(<https://www.ownews.tv>) 전국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을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북도지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며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 원 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 원

박 은 태

위 원

한 기 천

위 원

신 우 열

위 원

김 형 철

위 원

이 보 연

위 원

장 승 진

위 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2월 2일자 전국면 「이강덕 포항 시장, 구미에서 경북지사 출마 공식 선언」 제하의 기사
2. 2026년 2월 7일자 전국면 「이강덕 포항시장 출판 기념회 ‘대성황’...7천여 명 운집」 제하의 기사
3. 2026년 2월 10일자 전국면 「이강덕 전 포항시장, 10일 안동서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제하의 기사
4. 2026년 2월 11일자 전국면 「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박정희 ‘오마주’ 현수막...‘뉴트로 전략’ 주목」 제하의 기사
5. 2026년 2월 12일자 전국면 「이강덕 경북지사 예비후보 "행정통합 즉각 중단 요구"」 제하의 기사
6. 2026년 2월 16일자 전국면 「이강덕 “통합 진정성 입증하려면 불출마 선언하라”...행정통합 책임론 공방」 제하의 기사
7. 2026년 2월 19일자 전국면 「(특별 기고)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제하의 기사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 뉴스통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예 출마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룸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시심1

시 정 요 구 인 유성수
전남

피시정요구인 주식회사 주간장성신문사(주간장성신문)
전남 장성군 영천로 168, 3층
대표이사 변동빈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9일자 1면 「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 4자 초박빙...결선·선호투표 도입할 듯」 제하의 기사

주 문 이 사건 시정요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가 불공정하게 보도되었음으로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장성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면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시정요구인은 성별 및 연령별 지지층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시정요구인에 대해서만 타 후보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를 적지 않았고 이는 피시정요구인이 공정하게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의 성별 지지율은 차이가 미미하여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연령별 지지율은 타 후보자와 다르게 특정 연령대에서 30%를 넘는 지지율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은 연령대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그러면서 피시정요구인은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시정요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심의대상기사에서 타 후보자들과 다르게 시정요구인의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나,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보도되지는 않았고, 유권자들이 해당 내용으로도 시정요구인의 성별, 연령별 지지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심의대상기사가 시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 ③ 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시심2

시 정 요 구 인 김연호
경기

피시정요구인 양평언론협동조합(양평신문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61
대표자 이사장 김현술

심의대상기사 2026년 2월 5일자 제152호 15면 「선거 앞두고 자중지란… 흔들리는 양평 민주당」 제하의 기사

주 문 1.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양평신문고 15면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 ‘선거 앞두고 자중지란… 흔들리는 양평 민주당’ 기사 관련)은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재판·탈당·사천’ … 난파선 된 양평 민주당, 거세지는 내부 자성론)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신 청 취 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별지 2]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불가하다면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평군수 출마 예정자인 시정요구인이 여현정 의원의 측근으로서 군수 후보로 추대되어 사천 논란이 있고,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자녀 학교 폭력 연루설과 공천헌금설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시정요구인에 대한 비방 내지 타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지면을 구성하고 사진을 편집했다면서, 시정요구인이 마치 누군가의 대리인인 것처럼 ‘수렴청정’, ‘대타’, ‘사천’ 등의 악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낙인을 찍었고, 반론권 부여 없이 학폭설이나 공천헌금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예비적으로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이 문제삼는 용어들은 모두 정당한 정치적 수사이자 비판의 범주에 해당하고, 지면 구성이나 사진 편집은 피시정요구인의 편집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면서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사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의혹 제기이고, 비판적 논평형 기사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인의 해명을 따로 구하지는 않았으나, 시정요구인의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지면을 제공할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심의대상기사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로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인 시정요구인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양측이 제출한 내용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심의대상기사에서 ‘사천’, ‘추대’ 등의 표현을 통해 시정요구인의 출마와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타 예비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같은 날짜에 발행한 신문에 보도한 점, 심의대상기사에 시정요구인의 반론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볼 때,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 및 여타 예비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02. 2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내용

1. 제목 : 김연호 양평군수 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제152호에서 1면 우측 상단 이미지와 15면 <선거 앞두고 자중지란... 흔들리는 양평 민주당> 제하의 기사를 통해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수 불출마 선언 뒤 측근인 김연호 사무국장을 후보로 추대하여 수렴청정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자녀 학폭 연루설과 공천현금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호 양평군수 후보 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적법한 공천절차를 밟고 있고, 여현정 의원의 '대타'라거나 '사천'에 의해 추대된 것이 아니다. 또한 보도에 언급된 자녀 학폭 연루설과 공천현금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제152호에서 1면 우측 상단 <지방선거 후 주도권 잡기?> 제하의 내용과 15면 <선거 앞두고 자중지란... 흔들리는 양평 민주당> 제하의 기사를 통해 여현정 의원이 양평군수 불출마 선언 뒤 측근인 김연호 사무국장을 후보로 추대하여 수렴청정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자녀 학폭 연루설과 공천현금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연호 양평군수 후보 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적법한 공천 절차를 밟고 있고, 여현정 의원의 '대타'라거나 '사천'에 의해 추대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김연호 후보 예정자는 "보도에 언급된 자녀 학폭 연루설과 공천현금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2.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